



“FMD,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



# 대한한돈협회

우편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 ☎(02)581-9751/ Fax581-9769 농가지원부

문서번호	한돈협지 제310-1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22. 01. 11.	접수	일자	결재·공람	
수신	임원 및 지부(회)장		시간		
참조			번호		
		처리과			
		담당자			

## 제 목 가축분뇨법 상 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대체 관련 법률자문 결과 알림

1. 최근 일부지자체에서는 축산 냄새문제로 인한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사유로 하여 농가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가축분뇨법상의 사용중지 명령이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측에 법률 자문을 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 법률 자문결과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부(회)에서는 해당사항을 회원농가에게 안내하시어 부당한 피해를 받는 농가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주요내용:

가축분뇨법 제 18조의2에 따라 가축처분의 곤란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용중지처분 또는 사용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나, 가축분뇨법 18조의2의 법리적 해석, 과징금 제도의 취지, 가축분뇨법의 사용중지 과징금 대체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검토하였을 때 사용중지보다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붙임. 태평양 법무법인 법령 해석 검토의견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